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1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이재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한종훈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3. 접수 제4360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3. 접수 제43607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213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22. 9. 30. C는 원고에게 4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22. 7. 2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8.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43606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43607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43,9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4192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1. D는 C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C가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2023. 7. 27. 20,000,000원, 2023. 8. 3.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공인중개사 E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인중개사 E은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필해달라고 하여 수수료

200,000원만 지급받고 대필해 준 것이라고 한 점, ② 피고의 거주지는 창원이었는데 경기도 평택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C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C 등과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④ C는

재산명시기일에 1년 이내 유상 양도한 부동산이 없다는 취지로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차용금이라고 한 점, ⑤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C의 동생인 G이 2023. 7. 2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23. 7. 27. 피고가 C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별지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제2항에 ‘피고는 원고에게’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C에게’의 오기로

보인다.